

발간 등록 번호

11-1620076-000008-01

2010년 인권단체 상담사례 발표회

2010.11.24.(수)

광주은행본점 4층 연수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2010년 인권단체 상담사례 발표회

□ 행사개요

- 행사명 : 2010년 인권단체 상담사례발표회
- 일 시 : 2010.11.24.(수) 14:00~17:00
- 장 소 : 광주은행본점 4층 연수실 (광주광역시 대인동)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 대 상 : 인권단체 상담활동가

□ 진행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발 표 자
		사 회	김수연 (전남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1부 사례발표	2:00~2:20	노인학대의 현황 및 상담사례	심미영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
	2:20~2:40	아동성폭력 현황 및 상담사례	김상아 (광주전남해바라기아동센터)
	2:40~3:00	가정폭력현황 및 상담사례	박빛나 (영광여성의전화부설 여성상담센터)
	3:00~3:20	이주여성 긴급지원 현황 및 상담사례	문현미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3:20~3:40	장애인가정 현황 및 상담사례	김민선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3:40~3:50	휴식	
2부 사업공유	3:50~4:30	단체 별 주요 업무 현황	각 단체 참여자
	4:30~4:40	정리 및 해산	

프로그램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목 차 ■ ■

1. 노인학대의 현황 및 상담사례	3
2. 아동성폭력현황 및 상담사례	21
3. 가정폭력현황 및 상담사례	37
4. 이주여성 긴급지원현황 및 상담사례	51
5. 장애인가정상담소현황 및 상담사례	63

노인학대현황 및 상담사례

심미영(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현황 및 상담사례

심미영(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

1. 사회문제로서의 노인학대

노인학대문제가 심각성에 다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경로효친사상 등 효를 중심으로 한 전통윤리사상과 관습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노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 실상에 비해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지가 부족하고 대책이 미흡하다.

가정학대는 아동학대, 배우자학대, 노인학대 등의 분야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학대(elder abuse)의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우리 문화권은 물론이고 서구에서도 대중이나 전문가들의 관심을 늦게 받기 시작하였다. 노년기에 학대를 받고 있는 노인들이 존재하더라도 그들의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해 버린다면, 노인학대의 부정적인 영향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나 태도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인을 경시하는 사회 문화적 풍토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Kemp, 1997).

노인학대의 피해자는 학대피해노인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노인학대의 피해자 일 수 있다. 산업화, 인구의 노령화,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이 노인학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 이상 노인의 부양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가해자에게 노인 부양을 전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학대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방관하고 방치할 수만은 없으며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접근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그에 대한 인지를 높여서 노인학대를 하나의 학대로 인식하고 그 예방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II. 노인학대의 이해

1)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노인학대의 유형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유형별 대표적 행위

□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노인을 폭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발로 찬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주먹으로 폭행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등을 가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목을 조른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몸을 발로 밟는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질질 끌고 다닌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할퀴거나 꼬집는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입으로 물어뜯는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2.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낸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집 밖으로 쫓아낸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3.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예: 끈으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를 설치한다.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4.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5.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킨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으로부터 단절시킨다.
6.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에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한다.
7.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이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에게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 또는 조건에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정서적 학대 (Emotional Abuse)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일상생활(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2.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방이나 폭력적 행동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3.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죽이겠다.’ 고 협박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협박을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에게 고통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에게 창피를 준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4.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킨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 성적학대 (Sexual Abuse)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한다.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알몸으로 노출시켜 놓는다.

□ 재정적 학대 (Financial Abuse/Exploitation)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p>1.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적 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p>2.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허락 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 도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으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p>3.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이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 방임 (Neglect)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노인 스스로 청결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공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2.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를 방치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한다.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약취, 욕창, 염증 등 발생).
4.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자기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 유기(Abandonment)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Ⅲ. 노인학대의 현황

■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연도별 접수건수 (단위 : 회, %)

연도별	접수건수		상담회수		학대사례증감율
	학대	일반	학대	일반	
2008	197	275	3202	672	
2009	169	186	3149	629	85.7%
2009'10말	172	183	2961	549	87.3%

■ 피해자, 행위자의 성별구분 (단위 : 명/ %)

연도별	피해자			행위자		
	계	남	여	계	남	여
2008	197	87	110/ 55.8	211	139/ 65.9	72
2009	169	68	101/ 59.8	171	123/ 71.9	48
2009'10말	172	59	113/ 65.7	176	116/ 65.9	60

■ 피해자, 행위자의 결혼상태 (단위 : 명/ %)

연도별	피해자		행위자	
	배우자있음	배우자없음	배우자있음	배우자없음
2008	62	135	138	73
2009	73	96	100	71
2009'10말	69	103	100	75

■ 피해자, 행위자의 교육수준 (단위 : 명/ %)

연도별	피해자					행위자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2008	81	73	14	13	16	12	46	35	71	47
2009	49	64	20	20	16	11	25	21	61	53
2009'10말	61	66	20	15	10	6	23	33	60	54

■ 노인학대 유형 (중복적으로 발생가능) (단위 : 건, %)

구분	신체	정서적	재정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2008	45	141/ 42.7	48	86/ 26.1	8	2	330
2009	67/ 25.1	112/ 41.9	35	48	3	2	267
10'10	41/ 17.6	122/ 52.4	34	26	5	5	233

■ 피해자에 대한 조치 결과 (단위 : 회/ %)

구분	상담 서비스	복지 서비스	법률 서비스	의료 서비스	보호 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2008	2541/ 73.4	52	12	31	8	820/ 23.7
2009	2604/ 81.2	127	27	15	20	415/ 12.9
2010'10	2668/ 81.0	103/ 3.1	31	39	11	441

■ 행위자유형 (단위 : 명/ %)

구분	계	피해자본인	친족	타인	기관
2008	211	8	173/ 82.0	28	2
2009	171	3	137/ 80.1	29	2
10'10	176	5	133/ 75.6	35	3

■ 친족중 가해자현황

구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2008	16	104/ 60.1	20/ 11.6	28/ 16.2	2	1	2
2009	27/19.7	79/ 57.7	11/ 8.0	14/ 10.2	1	2	3
2010'10	16/ 12.0	77/ 57.9	13	22/ 16.5	1	3	1

■ 피해노인과 가해자의 특성

○ 피해노인의 특성	○ 가해자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노인 · 연령이 높은 노인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 ·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 · 직업이 없는 노인 · 경제적형편이 좋지 않은 노인 · 배우자가 없는 노인 · 부양자에게 의존적인 노인 · 알콜의존증 노인 · 사회활동 참여가 없는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 연령은 30~50대 · 대부분 가족 - 아들, 딸, 며느리 · 주 부양자가 가해자가 되기 쉽다 ·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자 · 교육수준은 고졸 이상 · 무직이거나 직업이 안정되지 못한 자 · 알콜 의존증, 정신적 문제가 있는 자 · 이전에 피해학대노인으로부터 학대 받은 경험이 있는자

IV. 노인학대 처벌 관련 법 규정

	내 용	벌칙 조항
노 인 복 지 법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39조의9제1호)	상해-7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5조의2)
		폭행-5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5조의3제1호)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제39조의9제2호)	5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5조의3제2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제39조의9제3호)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39조의9제4호)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 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9제5호)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5조의4제1호)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 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 한다. (제39조의12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7조제2호)

V. 학대의 영향 및 심각성

노인의 학대 경험은 정상적 노화과정에 따른 변화와 맞물려 종종 간과하기 쉽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지속적 학대로 주위 사람은 물론 학대를 받고 있는 노인 본인도 우울이나 분노 등의 변화가 학대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나이 듦에 따른 것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회·심리적 발달이 전 생애를 통해 계속되어 진다는 심리학자 에릭슨에 의하면 노년기에는 “절망” 대 “통합”이라는 심리사회적 발달위기를 겪게 되는데, 노년기에 경험하는 학대는 노인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여 노인이 자신의 삶을 전반적 의미에서 조합하지 못하게 되어 삶에 대한 회의와 후회, 낙심에 빠져 자신의 삶을 통합보다는 절망으로 유도하기 쉽게 된다. 특히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노년기에 사실상 노인들은 학대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우며, 피해노인이 심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정신적 외상이 증폭되어지고, 회복 또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적으로 많은 연구들은 학대나 방임 피해노인들이 높은 정도의 우울증과 치매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Dyer 등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인 학대노인이 일반노인보다 훨씬 높은 우울증 발병률을 제시하였고, 심리적 불안과 공포 등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자살을 기도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최근의 연구들은 심한 경우 학대로 인하여 노인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대 가해자가 성인자녀일 경우 노인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죄의식을 가지며 이런 행위를 하는 자녀를 성장시킨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 한다. 그리고 가해적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외관상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까지 참고 인내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성인자녀의 학대 행위를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 그러나 학대가 노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행하여지고 학대의 강도가 심해질수록 그 영향은 외상적이 되어 노인이 심한 감정적 동요, 실망뿐 아니라 배신감 까지 경험하게 되므로 노인학대는 피해자 및 가해자가 학대상황을 은폐한 상황에서 점진적이면서 깊게 상

처를 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효와 체면을 중시하고 자녀에게 의존성이 높고 부양기대감이 큰 우리나라의 학대피해 노인들에게 흔해 보이는 현상이며, 전통적 관습 속에서 성장한 현재의 노인들은 자신의 무능이나 의존을 원망하며 자신을 비난하고, 오히려 가까운 가족인 가해자는 사회적 비난과 낙인의 대상이 될까 염려하여 학대신고를 쉽게 할 수 없게 한다. 이런 요인들은 한국 상황에서의 학대노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외부 지원과 개입을 방해 한다고 할 수 있다.(김미혜, 2002)

VI.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방안

노인학대는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므로 피학대 노인의 측면, 가해자 측면, 피해자와 가해자 상호작용 측면, 가정환경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등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조망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종합적인 개입과 대책을 강구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권중돈, 2002).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경감을 목적으로 개입 가능한 부분은 노인의 의존성이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하고 은폐하기 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 차원의 대응방안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사회 전반의 노인차별주의 의식도 희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하여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정하고 경감시킬 수 있게 하고,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모색해주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딸, 며느리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도입,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강화와 같은 가족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복지, 의료 등의 노인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는 신문, 방송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교육과 사회이슈화의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보조인의 선임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인력 및 재정지원을 확

대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학대의 결과로 신체 및 정신증상을 호소하는 노인들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방임된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양비 구상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피학대 노인에 대한 서비스와 치료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개입도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패륜아 또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처벌위주의 대책들이 주로 제시되고 있지만,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태도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의무적 소양교육,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거나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인학대 관련자에 대한 보호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례에 따른 개별적 개입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분야의 전문가 팀으로 구성된 지역별 노인학대판정 및 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내의 노인학대 관련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학대를 은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학대받는 노인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과 일상적으로 접하는 지역사회의 통반장이나 사회복지전문요원, 노인복지기관과 시설의 종사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의사, 간호사, 치료사 및 약사, 계량기 검침원이나 아파트 관리인, 경찰관 등을 노인학대 옴부즈맨(ombudsman)으로 위촉하여 이들이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가정봉사원이나 방문간호사들의 경우 수시로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인학대나 방임 심지어는 자기방임까지도 가장 빠르게 인지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노인학대의 파수꾼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동성폭력현황 및 상담사례

김상아(광주전남해바라기아동센터)

'2010. 11. 24

아동성폭력 연왕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개요

근거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업형태

: 여성가족부(위탁) → 전남대학교병원(수탁)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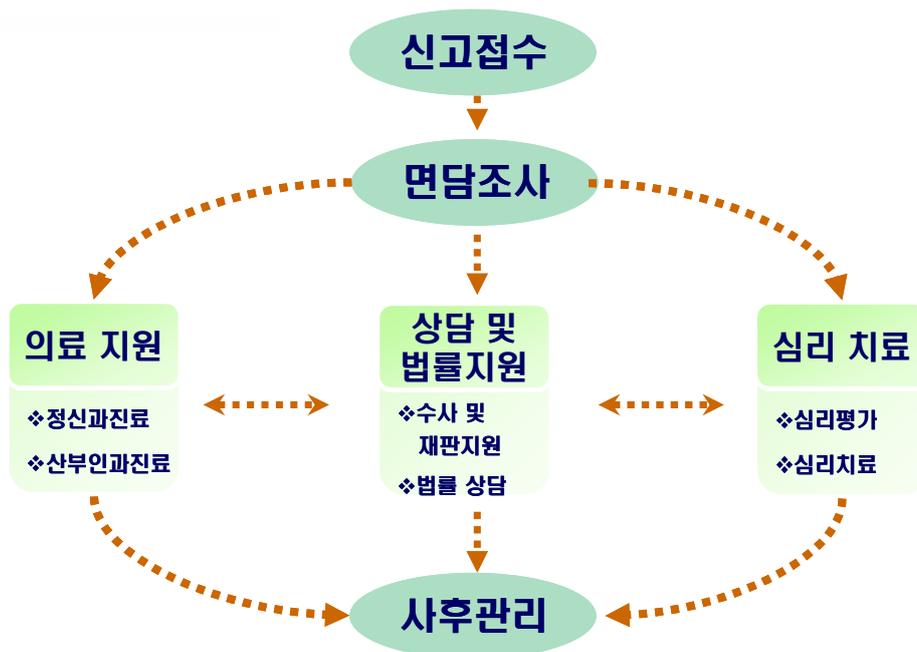
: 만13세 미만의 성폭력피해아동 및 지적장애인

에바라기아동센터 사업목적

- 13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등 성폭력 피해자만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Hub 기능수행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치료, 사건조사, 법률 지원 등 통합서비스 제공

➔ **성폭력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에바라기아동센터 업무프로세스



아동성폭력 사례관리 단계별 통합지원체계

- 1. 신고접수** - 원스탑지원센터, 1366, NGO, 경찰서, 상담기관, 개인
- 2. 초기평가** - 응급진료,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법의학증거 확보
- 3.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평가 및 지원** - 정신의학적 평가, 심리학적 평가, 법률적 처리를 위한 지원
- 4. 개입** - 놀이·미술치료,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부모자조모임, 가해자 치료 및 교육
- 5. 사후관리** -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꾸준한 관리를 통하여 성폭력 재발 예방, 사회적응 지원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피해자 지원 내용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성폭력 연왕 - 접수연왕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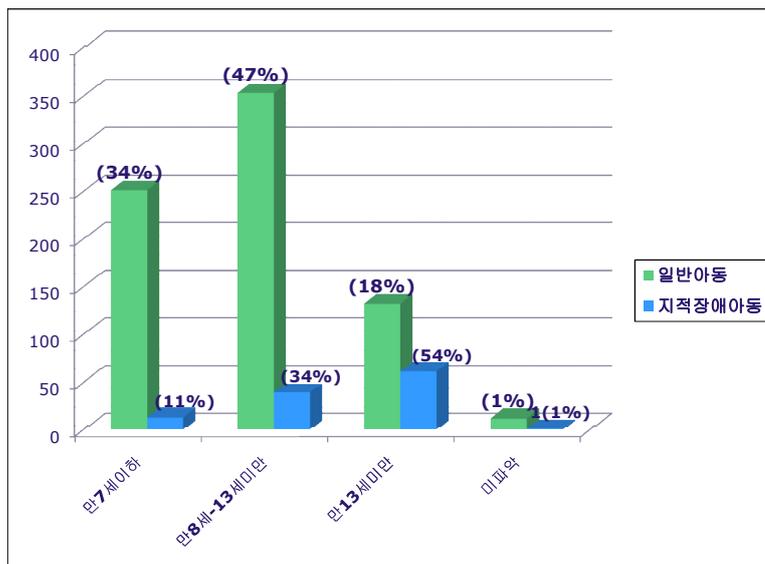
구분	총 피해사례 (지적장애)	내방사례 (지적장애)	안달평균 피해사례
2005년	82(19)	49(15)	11.7
2006년	202(38)	113(25)	16.8
2007년	160(22)	99(15)	13.3
2008년	186(35)	98(21)	15.5
2009년	149(15)	91(8)	12.4
2010년 10월	167(20)	81(10)	16.7
전계	946(149)	531(94)	14.5

- 2006년 : 용산어린이 성폭행 살인사건(2.17) 이후 접수 증가
- 2010년 : 조두순 사건(2009. 9월 언론보도), 김수철 사건(6.7) 이후 접수 증가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성폭력 연왕 - 피해자 특성

▶ 피해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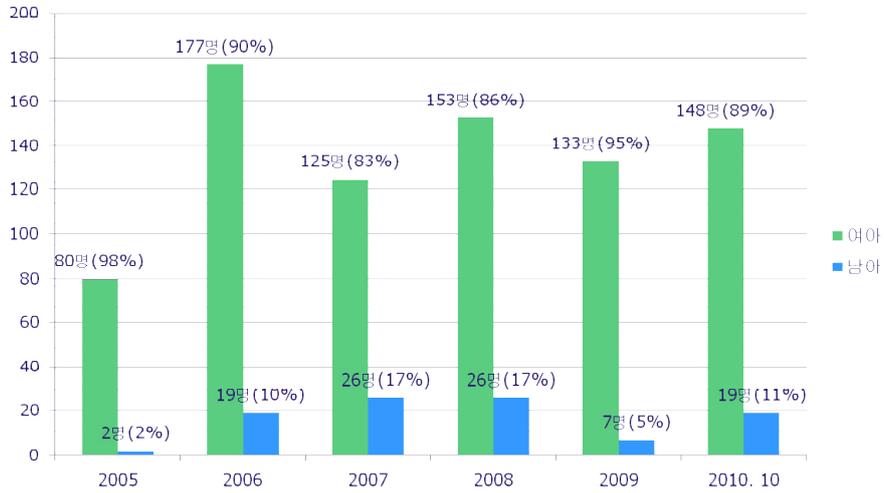


- 최소연령 : 만 2세
- 최고연령 : 만 34세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성폭력 연왕 - 피해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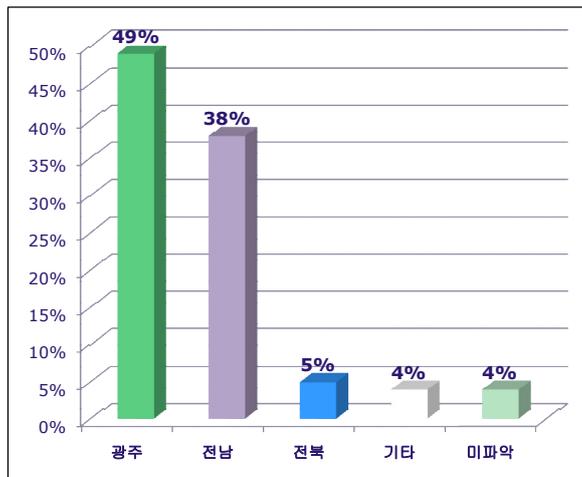
☞ 년도별 피해자 성별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성폭력 연왕 - 피해자 특성

☞ 거주지역



- 2009년

: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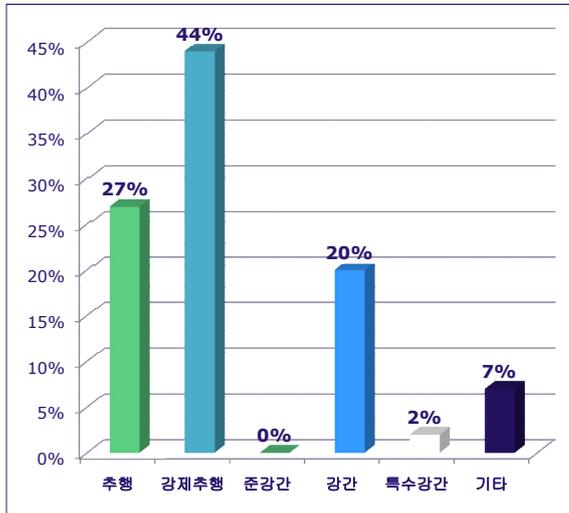
- 2010년

: 전남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개소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성폭력 연앙 - 피해자 특성

👉 피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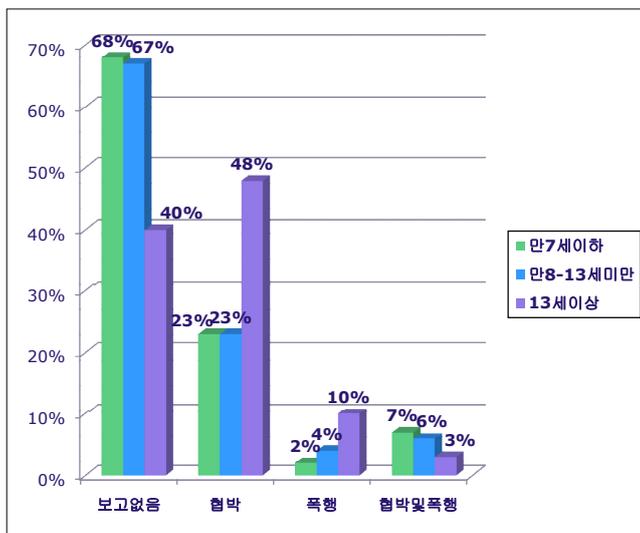


- 연령이 어릴수록 추행과 강제추행의 비율 높음
- 연령이 증가할 수록 강간의 비율 증가
- 13세 미만 아동: 여러 명의 가해자가 안 명의 아동 성폭행
- 13세 이상 청소년: 여러 명의 가해자가 안 명의 피해자를 성폭행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성폭력 연앙 - 피해자 특성

👉 폭행 및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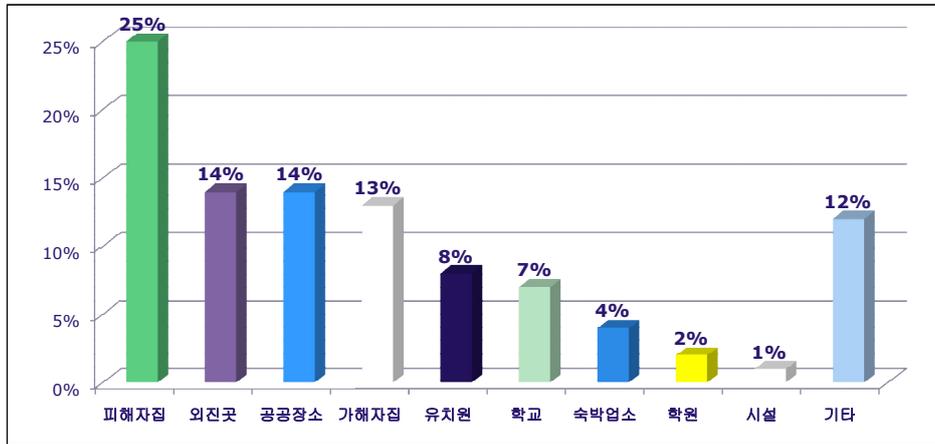
- 연령 증가와 함께 폭행, 압박의 비율 증가

- ✓만 7세 이하 : 32%
- ✓만 8-13세 미만 : 33%
- ✓만 13세 이상 : 61%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성폭력 연왕 – 피해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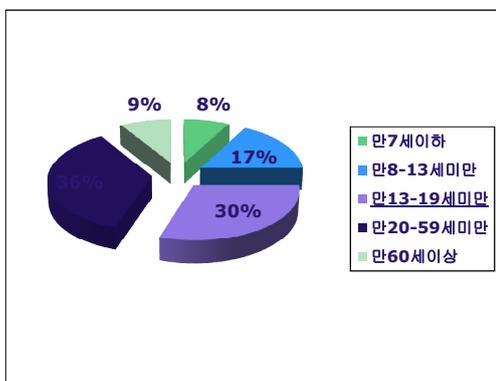
▶ 피해장소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성폭력 연왕 – 가해자 특성

- 가해자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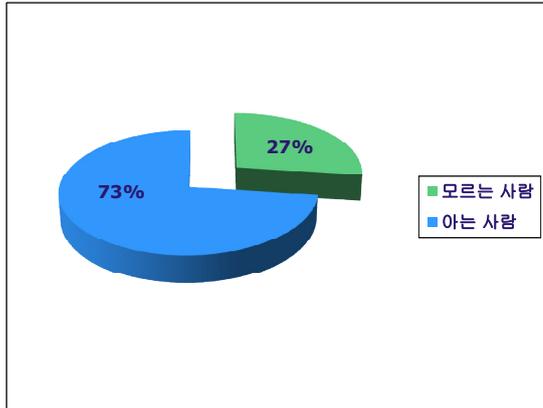
- 년도 별 미성년 가해자 비율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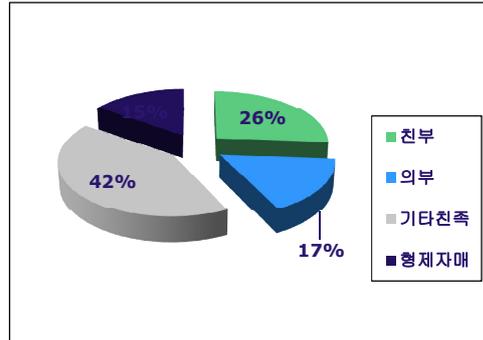
아동성폭력 연왕 – 가해자 특성

- 아는 사람이 73%



- 친족 피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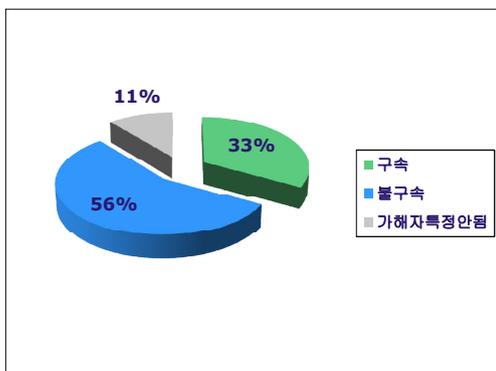
- ✓ 전체 가해자 중 20%
- ✓ 아는 사람 중 29%
- ✓ 가족의 지인까지 포함하면 33%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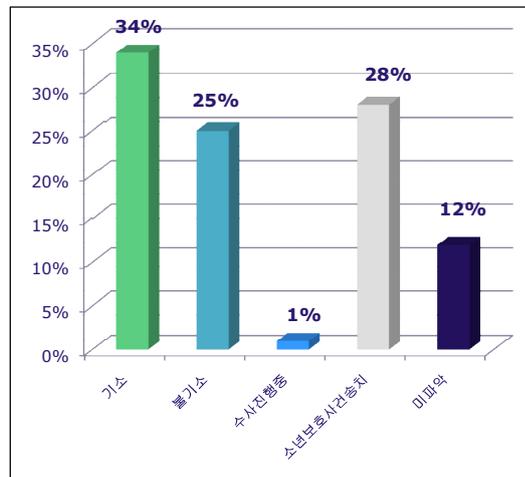
아동성폭력 연왕 – 수사 및 재판 연왕

- 가해자 구속 수사 연왕



- 기소 연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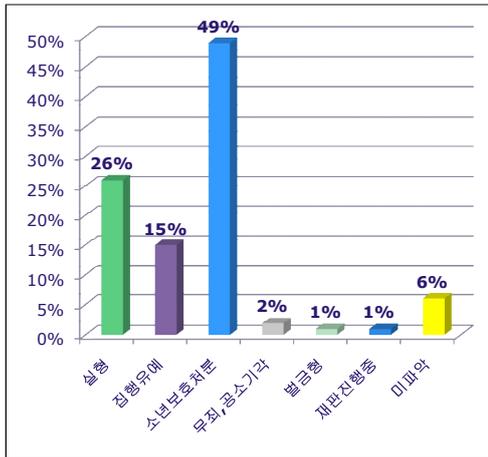
2005년: 62%, 2006년: 40%,
2007년: 15%, 2008년: 24%, 2009년: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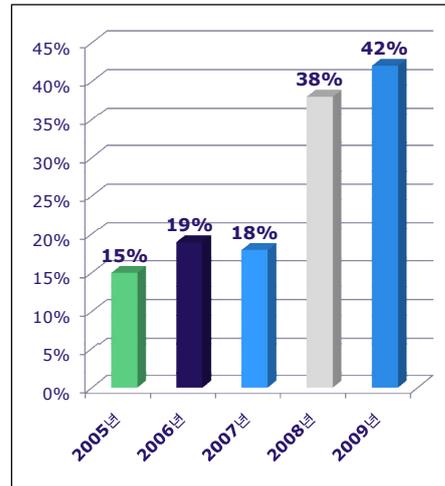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성폭력 연앙 - 수사 및 재판 연앙

- 전체 재판결과



- 년도 별 실형 비율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성폭력 연앙 - 지원 실적

(단위 : 건)

구분	의료지원	심리치료지원	상담및법률지원	전체
2005년	504	689	599	1,792
2006년	833	2,510	1,377	4,720
2007년	695	2,883	1,180	4,758
2008년	765	2,640	1,640	5,045
2009년	627	2,623	1,969	5,219
2010년 10월	571	1,671	1,622	4,064
전체	3,995	13,216	8,387	25,598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성폭력 연앙 – 지원실적(가해자)

❖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재발방지 교육 참여자 연앙

구분	보호관찰소 수강영령대상자	소년원	기타 (본인 및 보호자동의)	전체
08년	10(23%)	0(0%)	34(77%)	44(100%)
09년	1(4%)	5(19%)	21(77%)	27(100%)
전체	11(16%)	5(7%)	55(77%)	71(100%)

❖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재발방지교육 내용

구분	사전개별상담 및 심리평가	집단심리치료	2인 심리치료	개별심리치료	전체
08년	19	427	20	54	517
09년	38	201	-	99	338
전체	57	625	20	153	855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결 과 및 제 언

- 남아의 피해 증가 및 피해정도 심각(펠라티오, 항문삽입 등),
피해 연령층이 초등학생이 47%로 가장 많은 비율 차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보호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결과 및 제언

2. 지적장애인의 경우 공간의 비율이 높으며, 피해가 지속적인 점, 주변 사람들이 인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김.

☞ 지적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 개발과 보호시설의 확충 등 대처방안 강구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결과 및 제언

3. 19세 미만의 미성년 가해자가 해가 갈수록 상승하는 양상이며, 집단 가해 양상이 증가.

☞ 미성년 가해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통한 원인 탐색뿐만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전문적 치료와 교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결과 및 제언

4.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70%이상으로 지인에 의한, 특히 가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높음.

☞ 친족성폭력의 경우(친부) 친권 박탈제도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모와 아동의 양가감정으로 인해 처벌을 원치 않는 등 복합적인 문제 발생. 이들에 대한 자립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결과 및 제언

5. 기소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실형의 비중도 증가하는 양상보이고 있음

☞ 피해아동 보호 및 가해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유관기관들의 노력이 법조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제 언

1.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2.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책 필요
3. 미성년 가해자 및 부모에 대한 재범 방지
프로그램 활성화
4. 친족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강화
5. 형사소송 절차상 피해자 및 해바라기아동센터 권한강화

가정폭력현황 및 상담사례

박빛나(사)영광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상담센터

가정폭력 현황 및 상담사례

박빛나(사)영광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상담센터)

I. 시작하며

한국사회에서 가정 내 폭력, 특히 아내에 대한 폭력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이었다. 이러한 ‘일상적’인 폭력에 ‘범죄’라는 이름을 붙이고, 아내에 대한 폭력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은, 1983년 ‘여성의전화’가 창립된 이후의 일이었다. 아내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된 지 14년만인 1997년 ‘가정폭력 관련 법’이 제정되며 아내폭력 문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아내(가정)폭력 추방운동에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은 아내(가정)폭력 문제의 상당한 변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지 13년이 넘는 현 시점에서 아내(가정)폭력 문제는 여전히 엄청난 숫자로 존재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아내(가정)폭력 발생율은 엄청난 정도이며, 그 심각성은 생명을 잃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작년 한해 한국여성의전화가 조사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여성 살인 사건만 82건이며 그중 70건이 남편이나 애인에게서 죽임을 당한 경우였다. 올 상반기에도 벌써 44명의 여성이 남편과 애인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 5명이 함께 살해되었고 23명이 겨우 목숨을 건졌다.

사건의 전말을 알 수는 없으나 ‘동거하던 전처의 잔소리에 격분 목졸라 살해, 사체토막, 부부싸움을 자주했다는 주민들의 진술’, ‘부부싸움 중 LPG가스통에 불을 붙여 집을 태움. 아내가 밥을 해주지 않는다며, 불 지른 후 자살하러 간다며 나감’, 등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평소에 아내(가정)폭력이 지속되어 왔음을 짐작케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러나 아내폭력 사건은 경미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법 집행 후 각종 자료에 의하면 낮은 인식수준,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 태도, 응급조치적 의무이행적인 병원과 검찰의 낮은 임시조치 청구율, 법원의 소극적 태도, 부족한 가정폭력 관련 인프라가 지적되어 있어 성과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이 지적되고 있다.

1. 가정폭력을 말한다.

1) 가정폭력의 개념

- ▷ 사회적 정의: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경제적 학대를 하는 모든 행위
- ▷ 법적정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
가족구성원간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 ‘가족구성원’의 법적 정의
 - 현재 배우자, 이혼한 전 배우자, 동거하는 배우자(사실혼 관계)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 양자, 양녀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배우자와 혼인자식의 관계에 있는 자
 -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

2) 가정폭력의 유형

신체적 학대	심리/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폭행, 구타 등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	신체적 상해는 입히지 않지만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의 마음과 정서에 상처를 입히는 것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나 접촉을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 심리 정서적 학대

말로 상처 주기	· 큰 소리를 지른다. · 아이들 앞에서 배우자를 비난한다. · 욕한다. · 배우자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위협한다.
무시하기	· 배우자의 말을 무시한다. · 배우자에게 의논하지 않고 자신의 중요한 신상에 대한 결정을 한다. · 배우자에게 의논하지 않고 집안대소사를 결정한다.
경제적	· 배우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 배우자의 돈 씹씀이를 비난 한다

학대	· 용돈을 인색하게 준다. · 배우자가 돈을 쓴 곳을 추궁 한다 · 일일이 허가 받고 돈을 받도록 한다. · 술이나 도박에 돈을 쓴다.
구속하기	·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한다. · 배우자의 사회활동을 못하게 한다. · 전화내용을 엿 듣는다 ·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
위협하기	· 배우자의 이성관계를 의심하는 질문을 한다. · 외출을 못하게 한다. · 물건을 부수어 위협한다. · 물건을 배우자 있는 곳으로 던진다. · 애완동물을 학대하며 위협한다. · 때리거나 찌라고 위협한다.

3) 가정폭력의 원인

① 가족에서의 모델링

- 집에서 아이들이 폭력을 목격했을 때, 아이들은 폭력을 허용된 행위로 믿는다. 부모로부터 아이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때려도 된다” 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듣는다.

② 사회화

- 미디어, 교육, 제도, 법, 문화 등을 통해 사회화 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부추기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성역할의 규범을 학습한다.

③ 긍정적인 강화로서의 폭력

- 폭력행위가 부정적 결과(예: 감옥, 이혼)없이 긍정적 보상만 주어진다 면 폭력의 재시도는 쉽게 이루어진다.

④ 폭력에 관한 우리의 법과 사회의 메시지

-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심각한 범죄로 다루지 않는다.

⑤ 감정 표현 기술의 부족

- 감정을 표현하거나 부부관계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⑥ 분노와 폭력과의 관계

- 폭력적인 남편은 분노(감정)와 폭력(행동)을 차별화하지 못한다. 이 둘을 서로 연관시켜 폭력 없이 화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⑦ 스트레스와 폭력과의 관계

-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기 위해 또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흠 잡을 만한 사건’을 찾는다.

4) 가정폭력의 주기

① 긴장형성 단계

- 신경질적이 되거나 말하지 않는 등 평상시와는 다른 행동과 태도를 보인다.
-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보려 하지만 의논이 되지 않는다.
- 남편은 무시, 멸시 혹은 비난의 말로 학대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어디 갔다 왔는지, 무엇을 했는가를 따지고, 행동을 감시하고 확인한다.
- 배우자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못나서,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자신을 탓한다.
- 배우자는 "내 잘못"이란 생각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갈등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믿는다.

② 폭발단계

- 더 이상 참지 못할 정도까지 긴장이 고조된다. 남편은 이성을 잃고 공격하기 시작한다.
- 처음에는 밀고 잡아당기는 것으로 시작한다. 뺨 때리기, 머리 잡아당기기, 발로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결국에는 몽둥이와 칼을 이용해 신체적인 해를 가한다.
- 배우자는 결국 경찰을 부르거나, 이웃의 도움을 청하거나, 그 상황을 벗어 나기도한다.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항해서 직접 싸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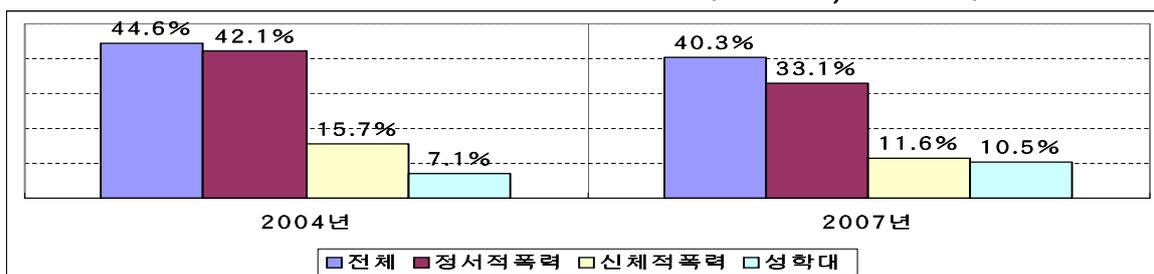
③ 화해단계(평정한 단계)

- 두 사람 모두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가라앉은 상태를 경험한다.
- 배우자는 상처를 치료해주고, 보상하려 애쓴다.
- 배우자가 도망가지 않을까, 자신을 싫어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한다.
- 평상시보다 더 부드럽고 열정적으로 사랑해준다.
-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부인도 그러한 말을 믿고 싶어 한다.
- 배우자는 “너 없이는 못 산다”는 말로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고 배우자도 “저 사람은 나 없이는 못 산다”라고 동정을 하면서 폭력을 합리화한다.
- 폭력의 기간이 길어지면 이 단계가 없어지기도 한다.

5) 가정폭력의 실태

- 우리나라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40.3%로, 부부 2.5쌍 중 1쌍이 최근 1년 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4년 44.6%에 비해 4.3%p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하겠다.

< 부부폭력 발생률 변화 추이(2004년, 2007년) >



※ 전체는 두 가지 이상 유형을 함께 경험한 중복응답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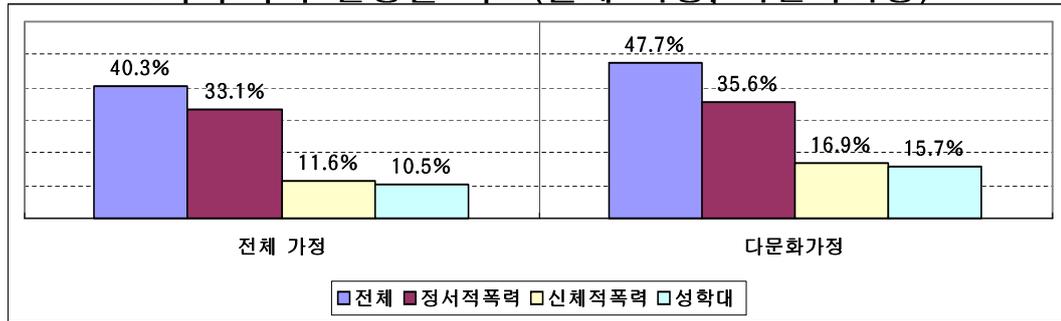
- 부부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이 33.1%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폭력은 11.6%로 9명중 1명, 부부간 성학대는 10.5%로 10명중 1명꼴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04년 결과와 비교할 때 신체적 폭력은 4.1%p 감소하였으나, 성학대는 오히려 3.4%p 증가 하였다.

- 또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실태도 함께 조사되었는데, 최근 1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47.7%로 일반적인 부부폭력 발생률보다 7.4%p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별도의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전체 조사 가구 중 아내는 외국출신이고 남편은 한국인인 38가구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표본수가 적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부부폭력 발생률 비교(전체 가정, 다문화가정)



※ 쉽게 설명하는 가정폭력실태

- 결혼 전에 때린 남자 10명 가운데 7명이 결혼 후에도 아내를 때린다.
- 처음 아내를 때리는 시기는 결혼 후 1년 이내가 80%이다.
- 결혼한 부부 3쌍 가운데 1쌍 꼴로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
- 결혼한 부부 10쌍 가운데 1쌍은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정도 이상의 폭력을 아내에게 행사한다.
- 심하게 아내를 때리는 남편 10명 가운데 6명은 아내를 때린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다.
- 아내를 때리는 남편 10명 가운데 7명은 자식도 때린다.

6) 가정폭력의 영향

■ 두려움

- ① 신체적 상처, 상해, 구타에 대한 두려움
- ② 자녀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 ③ 고립된 삶에 대한 두려움

■ 무력감

- ① 물리적 폭력 앞에서의 심리적 무력감
- ② 가부장적 가족관계에서 오는 무력감
- ③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오는 무력감

■ 낮은 자존감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한 여성은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구타당한 여성은 자신이 아

내로서 어머니로서 실패자라는 부정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남편의 부정적인 행동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기면서 죄책감을 갖는다.

■ 분노

가정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자에 대해 표현되지 않는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폭력 앞에서 피해자들은 때때로 가해자를 죽이고 싶은 충동과 죽이는 상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생산적인 방향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신체적인 만성두통, 심장 두근거림, 화병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다.

■ 우울증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는 피해자의 자아 존중감이 낮게 만들고, 자신이 진정 소중한 존재라는 자각의 상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절망감, 무기력감, 쓸모없음, 공허함, 억압된 분노 등의 감정을 지속시키면서 만성 우울증세로 나타난다.

■ 의존성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구타 남편과 심리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없으면, 남편은 자살하지도 몰라.” “내가 떠나면 아마 남편은 폐인이 될 거야.”라는 것으로 자신이 떠나지 못함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 하려고 한다.

7)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성

① 생물학적 요인

공격적 성향을 증가시키고,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에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 폭력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 유전적인 폭력성, 간질발작, 뇌졸중,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손상, 알콜중독, 약물중독이나 금단상태 등 생물학적인 요인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② 심리적 요인

- 화를 조절하는 능력의 부족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갈등상황에서 쉽게 분노하고 자주 기분이 바뀌기 때문에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노 이외의 다른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 배우자에 대한 질투와 소유욕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표현 될 수 있는데 배우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품고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자신감을 잃게 되고, 자신의 약함을 숨기기 위하여 통제의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식의 태도

배우자의 역할과 임무에 있어서 아내의 헌신과 복종을 요구하는 고정적인 신념을 가지게 하고 가족구성원들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지배하고자 한다.

③ 어린 시절의 폭력경험

어린 시절에 가정 내에서 폭력을 경험 하였거나,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가치를 가진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자녀나 배우자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다.

④ 사회경제적 상태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을 막론하고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실직이나 개인적인 좌절로 인한 가족의 스트레스 증가 등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⑤ 반사회적 성격이상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나 성격장애

2.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1) 경찰의 대책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을 접하면 ‘가정폭력방지법’에 의거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일선 파출소까지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수사 지침과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기 위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하며 지역사회의 각 전문 분야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2) 법조계의 대책

소속된 구성원에 대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통한 시각

교정과 ‘가정폭력 방지법’에 규정된 사항의 정확하고 신속한 수행을 통해 사회적 통제장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3) 상담소와 일시보호시설의 대책

상담소와 일시보호시설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여성주의상담을 원칙으로 피해자를 상담해야 하며 가정폭력의 행위자와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는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담을 지향하여 피해자가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피해자 상담과 더불어 가정폭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의 의식변화와 남녀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소는 지역사회에 속해 있는 각 전문 분야를 연결하는 연계망을 구축하고 지역의 중심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특히 상담소는 피해 여성을 상담하고 보호하는 역할과 함께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적 운동을 해 나가는 구심체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4) 행정적(사회제도적) 대책

시민단체의 폭력추방운동을 지원하고, 대중매체 등에서의 폭력추방을 위해 폭력관련 방송심의 위원회 규정 및 폭력영상물 등 단속을 강화하고, 민주적 가족규범 정립을 위해 남녀평등의식의 지속적 함양 및 건강가족 운동을 확산하여야한다. 그리고 가정폭력문제의 심각성 등 사회적 홍보 강화 및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을 통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5) 교육적 대책

가정폭력의 가부장적 토대에 대해서 초중고교에서 교육되어야한다. 또한 지역 사회와 직장을 중심으로 잠재적인 가정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가정 폭력 인식 제고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언론과 지역모임 활동으로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이고, 그 피해자는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받아야 한다는 것이 홍보되어야 한다.

II. 가정폭력 피해 상담 사례

상담사례 1.

- 내담자: 주○○(32세, 여)
- 가족사항: 남편, 본인, 아들1(5세)
- 남편과 타 지역에서 살다가 남편을 피해 아들과 함께 부모님이 계신 영광으로 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음(구순구개열)

1) 상담내용

2004년 은행권에 근무하던 중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납치당하 다시피 동거를 시작.

첫째 아이가 태어난 후 병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 그로인해 내담자의 장애를 시댁 및 남편이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남편과 시댁의 본격적인 가정폭력이 시작 됨.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등, 경제적 학대 및 폭행, 협박, 친정식구 모독 및 협박 등을 수시로 해옴.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협박에도 아이만을 바라보며 지내던 중 집에 들어와 아이가 살갑게 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담자의 목살을 잡고 벽에 던지며, 발로 머리를 차는 등의 폭행으로 쓰러지던 중 다리를 접히게 되었고, 칼을 찾으러 부엌으로 가는 남편을 말리는 과정에서 남편의 내동댕이로 인해 다리가 완전히 꺾이게 됨. 쓰러진 내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계속해서 하였고 5살 된 아이의 도움으로 인해 친정으로 도망쳐 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퇴원 후 친정에 있는 내담자와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야구방망이와 칼을 차에 싣고 와 목에 대는 등 폭력을 멈추지 않음.

2) 내담자의 욕구

- 남편과의 이혼 및 양육권

- 친정부모님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및 의료비 지원
- 자녀의 양육 지원
- 남편에 대한 가족들의 불안감 해소

3) 개입활동

내담자의 욕구	활동내용
① 남편과의 이혼 및 양육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정보 제공 - 무료법률구조공단 구조요청 - 무료법률구조공단 동행 및 법원 동행 - 탄원서 제출
② 친정 부모님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및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현재 상황 인지시키기 - 경력을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 - XX면사무소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③ 자녀의 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생활지원계와 연계, 다니게 될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요청 - 아이사랑카드 변경 및 발급 요청 - XX어린이집과 지속적 연계 - 아이와의 지속적인 상담
④ 남편에 대한 가족들의 불안감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X파출소와 연계하여 순찰 강화 확보 - 탄원서를 통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 가족상담 실시

4) 성과

- 재판이혼을 신청한지 5개월 후 이혼 판결
- 가정폭력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및 그로인해 발생한 병원비 보상 (800만원)
- 자녀의 양육비(매달 30만원) 및 양육권(남편 - 월 1회 면접교섭)
-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후 선정되어 지원(300만원)
- 경력을 살려 경리로 취직되었음.

이주여성 상담현황 및 상담사례

문현미(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 상담현황 및 사례

문현미(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설립 목적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지원 하는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이다. 2010년 7월말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현황을 보면 전체 137,448명이며, 국적별 결혼 이주여성의 현황으로 중국이 66,5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베트남 33,143명, 일본 10,222명, 필리핀 6,969명, 캄보디아 3,741명, 태국 2,458명, 몽골 2,406명, 그 외 나라가 12,001명이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통계출처.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이렇게 한국으로의 여성의 이주화가 시작된 원인은 개인적인 욕구와 자본주의 시장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한국의 출산정책이 원인이 되었다. 현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의 국제결혼의 상업화와 함께 종교계에서의 상업적인 중매, 또한 여성의 이주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약으로서 성사된 국제결혼부부가 일반 국내 부부들보다 문화적, 언어적, 경제적, 성격적인 요소들로 인해 결혼생활 정착을 더욱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이다.

2009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주여성의 갈등 원인과 인권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혼, 별거의 이유로 성격차이(29.4%), 경제적 무능력(19.0%), 외도(13.2%), 학대와 폭력(12.9%), 심각한 정신장애 및 기타(9.8%), 음주 및 도박(8.7%),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7.0%)등의 순이었다.

일반가정보다 이주여성의 경우 폭력경험을 보면 53.6%가 무응답인 가운데 응답자 중 가정폭력의 경험이 없다고 명확히 답한 경우는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조사에 근거하면 22.2%가 어떤 형태로든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통계출처. '적응과 폭력사이' 자료 참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와 같은 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적인 현실이 점점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도와줄만한 지지체계가 사회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국가와 민간단체들이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폭력피해여성을 지원하는 긴급전화 1366도 있으나 언어적인 한계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주여성을 위한 특화된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서울중앙센터가 당시 여성부에 의해 2006년 11월 9일 설립하게 되었고, 현재는 여성가족부에서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9년 지역센터(광주, 수원, 대전, 부산) 4개소가 생겨났으며, 광주센터는 2009년 2월 5일 그 첫 문을 열게 되었다. 그 후 2010년 최근에는 2개소의 지역 센터(구미, 전북전주)가 추가로 개소하게 되었다.

본 기관에서는 이주여성들의 심리적인 지원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교육과 더불어 한국어 교육, 법률용어, 등 상담지원 활동 제반에 필요한 이주여성들을 훈련하여 자국어로 상담과 통역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더 가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은 입장의 이주여성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주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개발하고 이주여성 자존감 향상과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업무 내용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학대 등의 피해를 입어 긴급보호가 필요한 이주여성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 가족갈등, 생활문제 등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례에 따라 문제를 다각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소, 쉼터, 법률지원상담소, 병원, 여성단체, 복지단체 등과 네트워크 망을 형성하여 내담자에게 즉각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센터에서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크어 9개 언어를 내담자의 모국어 욕구에 맞는 자국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중앙센터는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1577-1366으로 연락을 하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광주센터의 경우 영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몽골어 5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 상담, 면접 상담, 긴급 상황 시 현장 방문지원과 함께 내담자의 욕구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버 상담 가능 : 10개국 언어 사용

www.wm1366.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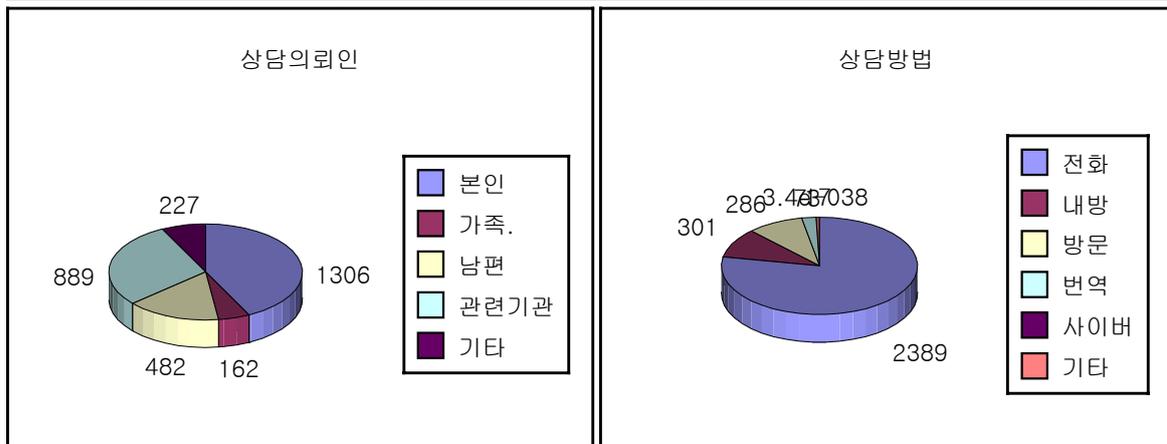
피해자를 위한 모든 기관과의 네트워크



3. 이주여성긴급지원 광주센터 상담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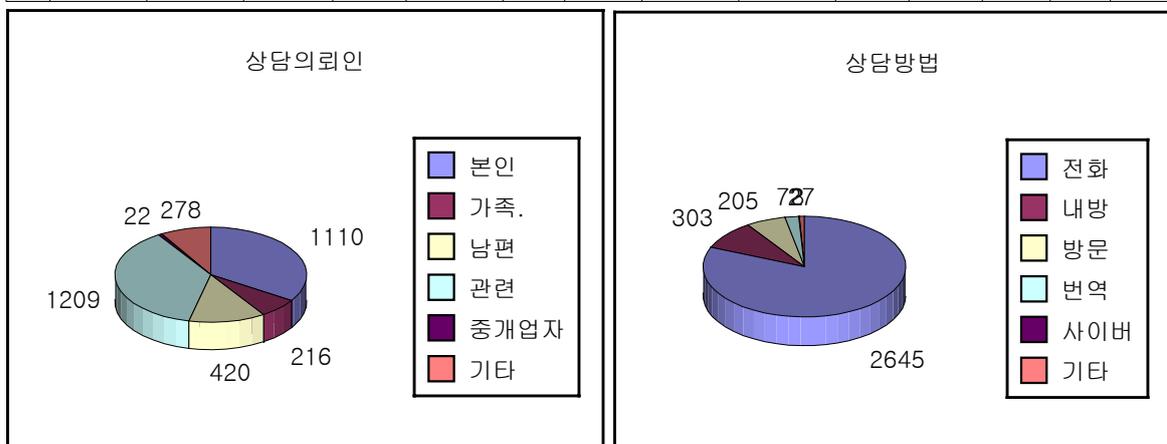
1) 광주센터 2009년 전체 상담 통계

	상담의뢰인						상담방법						
	계	본인	가족. 친인척	남편	관련 기관	기타	계	전화	내방	방문	번역	사이버	기타
누계	3,066	1,306	162	482	889	227	3,066	2,389	301	286	73	-	17



2) 광주센터 2010년 1월-10월 전체 상담통계

	상담의뢰인							상담방법						
	계	본인	가족. 친인척	남편	관련 기관	중개업자	기타	계	전화	내방	방문	번역	사이버	기타
누계	3,255	1,110	216	420	1,209	22	278	3,255	2,645	303	205	72	3	27



4. 상담 사례

1) 인권 침해적 상황

이주여성이 겪는 피해사례 중 특히 인권침해 상황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여성의 경우 한가지의 문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주여성들이 대부분 시댁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통계. 2009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에 의하면 이주여성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17.2%로 남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4.4% 높다.)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여성의 자기결정권이나 자율성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기 일쑤이며 많은 돈을 들여 성사시킨 혼인이어서 행여 이주여성이 도망갈 염려로 지나치게 간섭을 하며, 일상적인 전화와 채팅 감시부터 시작하여 모든 출입을 확인하거나 아예 외출을 금지하는 일들은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

또한 이주여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체류문제와 관련된 체류확보(외국인등록신청, 연장, 변경, 재입국)이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의 신원보증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악용한 한국인 배우자 또는 가족, 결혼 중개업자들이 이주여성의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빼앗아 이를 가지고 여성을 협박하는 경우도 흔히 일어난다.

이렇게 인권침해에 대해서 이주여성들은 여전히 약자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주여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사례1

몽골여성 E씨(34세)는 2007년 가을,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결혼하여 2008년 1월 한국에 입국하였다. 남편과 시어머니, 시할머니 등 3대가 함께 살면서 가족의 문화 차이 때문에 한국에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

었다. 옆에서 찬찬히 알려주면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힘들었다. 한국어, 한국풍습도 몰랐고, 한국 음식도 먹기 힘들었지만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생활하려고 노력하였다. E씨 나름대로 시댁식구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부부의 결혼생활에 항상 끼어들어 참견을 하였고, 몽골여성의 걸음걸이, 잠자리에 대해 또 옷 입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등 모든 행동에 대해서 간섭하면서 가르쳐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억압하였다. 또 내담자가 한국어 교육을 받으러 가면 교통카드만 주고 용돈을 전혀 주지 않았다. 핸드폰 사용도 통제하였고 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분실신고를 한 뒤 화를 내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마음이 아파서 옷을 챙겨서 집을 나왔다가 7일 후 중개업자를 통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E씨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집을 나오기 5일 전에 남편이 시어머니의 문제로 화가 나서 발로 내담자의 손을 차서 뼈를 다쳤고, 병원에서 기브스까지 한 상태였다.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시어머니는 매사를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E씨가 하는 일이나 말을 부정하고 더 많이 일하기를 바라고, 마음에 안 들면 이웃이나 친척에게 나쁘게 말하면서 무시한다. 시어머니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아프다’고 하며 E씨를 힘들게 했다. E씨는 한국에서 아이도 낳고 행복한 생활을 하려고 왔기에 이런 상황은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사례2

중국여성 c씨는 입국한지 4개월이 되는 동안,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했다. 남편이 월세 방이라고 구해놓은 곳에서 며칠만 지냈을 뿐, 처음에는 숙식이 제공되는 식당에 취직시켰고, 그 다음에는 모텔에 취직시켜 놓고 월급의 절반을 달라고 한다. 가끔씩 모텔에 와서 자고 가기도 하는 남편은 돈을 주지 않으면 이혼하고 신원보증을 해제시킨다고 협박을 한다.

2) 문화적 차이

상담요청의 많은 부분 중 언어적 문제와 함께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문화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이다. 한국사회의 부계사회와 대부분의 아시아 권역의 나라는 모계사회인데 이러한 문화차이를 서로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서 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20세 가까운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의 문화권에서 살다가 갑작스레 다른 환경에 들어와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를 이주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에 흡수되어야 한다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이다.

■ 사례3

중국여성 s씨는 5월에 있을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걸쳐 통역을 요청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문화차이에서 비롯되는 부부 의사소통에 따른 갈등문제였다. 갈등의 예를 들자면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를 어떤 것으로 입느냐는 것이다. s씨는 중국 한족이라서 결혼식 당일 꼭 빨간색 옷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으로 시댁식구가 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혼식에 어떻게 빨간색을 입을 수 있느냐며 반대했다. 내담자는 그렇다면 웨딩드레스는 아니더라도 피로연때라도 꼭 빨간색을 입어야 된다고 했고, 시댁식구들은 결혼식 날 한국에서는 빨간색 옷을 입을 수는 없다고 완강히 반대하였다. 다음 문제는 결혼식 비용이었는데, 내담자의 남편 될 사람은 중국에 가서 내담자를 초청하느라고 많은 비용을 써서 결혼 비용은 최대한 절약하려고 대여한 예복 외에는 옷을 새로 구입하지 않고 입던 옷을 입겠다고 했다. 그런데 s씨는 남편이 한 말을 내담자더러 자기 친정집에서 돈을 구해 오라는 뜻으로 오해하고 결혼식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모두를 당황케 하였다고 한다.

3) 가정폭력

2007년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결혼이주여성의 12.3%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폭력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인격적 모독이며, 결혼 비용을 온통 다 부담한 남성들은 여성들을 대등한 배우자로 보는 대신 돈을 주고 산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더 나아가 남성 배우자의 뜻에 조금만 거슬려도 폭력을 휘두른다. 물론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 생활에 서투른 부분도 있어 결혼초기 사소한 오해가 갈등을 만들고 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

폭력에는 신분증 압수부터 직접적인 구타, 의처증, 모욕과 무시,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유기, 쫓아냄 등 정신적, 육체적 폭력이 다 포함되는데 사회적 자원이 빈약하고, 나이 차이가 많다보니 젊은 아내들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되면서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이 의혹은 언젠가는 도망 갈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어 사소한 갈등에도 불신이 확대되어 폭력으로 이어진다. 이주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이 “너네 나라로 가라”는 아주 모욕적인 말이다. 결혼하여 이 땅에 살려고 온 이주여성들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돌아가라고 협박성 발언을 일삼아서 이주여성들을 힘들게 하고 여성들은 일상에서 약자로 살아간다.

■ 사례4

결혼한 지 6개월 된 베트남 여성 L씨는 집에서 가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동안 남편에게 4차례 구타를 당하였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제대로 못한다면서 남편을 답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유였으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길에 혼자 버려두었다. 무서워서 한국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결혼중개업체에 연락했고 남편이 데려갔다. 그 후로도 계속 나가라고 하였고 시어머니는 욕을 했고 남편은 구타를 했다. 이혼하자면서 결혼반지를 돌려달라고 했고, 돌려주지 않자 중개업체에 가라면서 또 길에 혼자 버려두고 가버렸다. 중개업체가 남편에게 연락을 하여 남편이 아내를 데려갔으며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집에

손님이 온 틈을 타서 L씨가 도망쳤고 경찰과 1366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참고 문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결혼이주여성의 삶 그리고 인권,
2006~2009년 상담실적 분석

1577-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 상담원 교육자료

이주여성긴급지원 광주센터 상담통계 자료

2009년 보건복지부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연구 통계

장애인가정상담소현황 및 상담사례

김민선(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장애인가정상담소 현황 및 상담사례

김민선(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1. 기관현황

1. 설립목적

- 폭력에서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므로 보단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을 한다.
- 예방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기본권 회복을 위해 지원하므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 보다 밝고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혁

- 1990. 01. 실로암결혼상담소 운영(15년)
- **2006. 03.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개소(현4년)**
- 2006. 05.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비영리법인 신고 증 발부
- 2006. 08. 장애인부부상 시상(제11회)
- 2007. 01. 가정폭력 예방 홍보활동(년중)
- 2007. 05. 장애인 가정폭력 예방 지침서 발간
- 2007. 05. 1주년 기념 가정폭력 예방세미나
- 2007. 06. 장애인가정폭력예방 자료집 및 리플렛 제작
- 2008. 01.~ 가정폭력 예방 홍보활동(년중)
- 2009. 03.~ 장애인가정폭력예방 및 홍보활동(년중)
- 2009. 05.~10. 장애여성, 엄마 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여라 프로그램 진행
- 2009. 07.1 장애인부부상시상(제12회)
- 2009. 10.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이전개소식
- 2010. 01.~10. 장애인가정폭력예방 캠페인(년10회)
- 2010. 03.~05 문화체험(년 2회기), 비즈교실(5회기)
- 2010. 06. 상담소 이전(법인 사무국 내)
- 2010. 06. 09. 심신회복캠프(년 2회기)

- 2010. 08.~10. 미술치료(년 8회기)
- 2010. 07.~11. 여성발전기금사업/여성장애인동료상담원양성교육실시(11회기)
- 2010. 11. 상담원역량강화교육

3. 상담업무

- 가정폭력상담
- 자녀 교육 상담
- 일반상담
- 결혼상담

4. 지원업무

- 법률지원 : 법률상담, 소송지원
- 의료지원 : 병원연계, 치료비지원
- 보호시설연계 지원 : 여성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 쉼터 및 장애인생활시설 및 그룹홈 연계
- 상담기관 연계 지원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 쉼터 연계
- 자립지원 : 취업정보 제공, 자립주택연계

5. 교육 및 홍보

- 가정폭력예방교육
- 캠페인 실시
- 월간실로암 소식지 홍보

6. 상담소 운영

〈표1〉 상담소 운영현황

시설명	설립일	주소	연락처
(사)실로암사람들 부설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2006년3월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032-10번지	전화(062)654-0420 팩스(062)654-0424 E-mail : siloam0420@hanmail.net
실무자현황	소장	상담원	지원인력
4명	1명	2명	1명

II. 상담소 운영실적 및 지원 현황

1. 운영실적

1) 상담실적

2009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상담건수는 총 3,640건이었다. 이중 장애인상담이 2,145(59%) 이었으며, 일반인 상담 1,495(41%)건으로 장애인상담소에 장애인상담 이외에도 일반인 상담이 41%를 차지하는 이유는 장애인가정의 전반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2〉 상담실적(2009년~2010년 10월)

(단위 : 건)

년도	총 계	장 애 인	일 반
2009년	2,296	848	1,448
2010년(1월~10월)	1,344	1,297	47

2) 상담내용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상담이 916건, 이혼상담 164건, 성폭력상담131건, 성상담 7건, 부부갈등상담 18건, 가족문제 상담 97건 기타상담 2,307건으로 2009년에는 가정폭력상담이 300건으로 총상담의 13%였으나, 2010년 10월 현재 가정폭력상담이 전체상담의 616건으로 46%로를 차지하고 있다.

〈표3〉 상담내용(2009년~2010년 10월)

(단위 : 건)

년수	계	가정폭력	이혼	성폭력	성상담	부부갈등	가족문제	기타
2009년	2,296	300	160	34	7	3	47	1,745
2010년(1월~10월)	1,344	616	4	97	0	15	50	562

3) 상담방법

상담방법을 살펴보면 전화 문자 영상 상담이 65%, 면접상담33%로 일반상담소에 비해 장애인상담소가 면접상담이 많은 부분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유는 전화나

문자 영상상담으로만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말 해 주고 있다.

〈표4〉 상담방법(2009년~2010년 10월)

(단위 : 건)

연수	계	전화 및 문자 영상	방문	내방	사이버	기타
2009년	2,296	1,409	425	411	0	51
2010년(1월~10월)	1,344	956	229	152	7	0

4) 가정폭력 장애유형

가정폭력 상담 중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언어·청각 장애인의 상담이 20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의 상담이 15명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언어·청각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가정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겠다.

〈표5〉 가정폭력 장애유형(2009년~2010년 10월)

(단위 : 명)

연수	계	지적	지체	뇌병변	언어 청각	정신	시각	기타
2009년	16	2	4	2	6	2	0	0
2010년(1월~10월)	40	13	6	0	14	3	0	4

5) 가정폭력 가해자 유형

가정폭력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 폭력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으며, 지적장애인 피해자 중에는 배우자가 가해자임과 동시에 시댁부모형제의 폭력에도 노출되어 있음을 볼 때 지적장애인 폭력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다.

〈표6〉 가정폭력 가해자 유형(2009년~2010년 10월)

(단위 : 명)

연수	배우자	부모형제	2촌이내 혈족	4촌이내 혈족	애인	기타
2009년	13	1	3	0	0	0
2010년(1월~10월)	38	6(4중복)	0	0	0	0

2. 지원 실적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의 지원 실적을 보면 심리정서지원이 28% 가장 많은 부분 지원 하였으며, 다음으로 법률지원 의료지원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비롯한 장애인시설연계지원도 활발히 지원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표7〉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의 지원실적(2009년~2010년 10월)

(단위 : 건)

연수	심리정서적	법률지원	의료지원	시설연계	고소·고발	제보	기타
2009년	292	16	9	7	7	1	1
2010년(1월~10월)	735	234	82	30	26	0	245

III. 사례로 본 장애인가정폭력상담

남편과父에 의해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된 사례.

IV. 장애인가정폭력 피해자와 장애인가정을 위한 제언

1. 폭력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변화 절실.

여전히 우리사회는 가부장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 할 나위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가장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재는 폭력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음을 볼 때 폭력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정폭력가해자의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실시를 위한 대책마련.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의 대부분의 가해자는 폭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맞을 짓을 하여 폭력을 행했다는 등으로 폭력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가해자가 대부분이다.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나 폭력이 범죄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가해자를 볼 때 가정폭력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교육이절실함을 말해주고 있다.

3. 가정폭력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

오랫동안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던 가정폭력피해자의 대부분은 심리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장애인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가정폭력상담소 1곳과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1곳 2개소가 있으며 여성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쉼터는 경기도 1곳과 광주광역시 1곳 2곳에 불과하며,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쉼터는 경기도 1곳 뿐, 광주광역시에 있는 여성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쉼터는 정부의 지원마저 받지 못하고 있어 100%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와 지원이 시급하다.

5.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중·장기보호책마련.

가정폭력에 노출된 장애인 중에는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을 시설이나 지원체계가 전무하여 여전히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쉼터의 보호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일정기간이 되면 퇴소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 오갈 곳이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장기적이고 연구적인 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생애주기를 고려한 물리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지원체계 마련.

장애인가정폭력의 원인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재로 인한 폭력과 경제적 빈곤에서 오는 갈등 등임을 살펴 볼 때, 사회적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